

# Ⅶ. 입 목

##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 1. 정 의

- 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을 말한다.
- 2) 지상의 과수란 지상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과수목을 말한다.
- 3) 임목이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 4) 죽목이란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죽목을 말한다.

## 2. 용 어 해 설

가. 재 적[材 積] : 수목의 부피

나. 흉고[胸高]직경 : 임목 상태에서 120cm(사람가슴까지의 높이)높이 부분의 나무직경

다. 수 고[樹 高] : 나무의 지원부(地元部)에서 초두부(初頭部)까지 전체높이

라. 지원부[地元部] : 나무밑둥과 토지가 서로 맞닿는 부분

마. 초두부[梢頭部] : 나무위의 끝부분

바. 재 장[材 長] : 원목의 길이를 말하며, 원목이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일정한 크기(길이)로 절단해놓은 상태에 있는 나무를 말함.

사. 간재적[幹材積] : 나무 한본(1本)의 전체부피를 말함.

아.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山林經營技術者] 수행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자. 산림경영계획서 : 모든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에 대한 계획을 [營林計劃書] 연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서

차. 임지경계[林地境界] : 산(山)의 매필지마다의 경계를 말함.

카. 기설차도(既設車道) :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로서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함.

타. 조수입(粗收入) : 주산물 평가액(생산량×농가평균 수취가격)과 주산물 생산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의 평가액을 합계한 총액

파. 경영비(經營費) :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투자한 일체의 비용

하. 경영비율(經營費率) : 1-(소득/조수입×100)

### 3. 종 류

#### 가.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나. 유실수(총16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유자, 참다래, 자두, 매실, 호두,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밤

### 4. 시가 조사방법

- 1) 과수, 임목, 죽목을 수종, 수령, 지역별로 세분하고 구분하여 조사한다.
- 2) 산림목은 m<sup>3</sup>당 가격을 시장가역산법에 의한다.
- 3) 유실수는 10a당 과수별 작목에 따른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
- 4) 유실수의 수종별 총경영비, 표준재식주수를 조사

###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 산림목

##### 가. 재적(m<sup>3</sup>)이 나타난 경우

$$\text{시가표준액} = \text{재적} \times \text{m}^3\text{당 단가}$$

- 1) 재적 : 산림경영기술자가 직접조사, 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
- 2) m<sup>3</sup>당 단가 : 시장가역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 : 소나무 · 재적 : 125.2m<sup>3</sup> · 소나무 m<sup>3</sup>당 단가 : 62,160원
- 취득일시 : 2017.05.06
- 시가표준액  
 $125.2\text{m}^3 \times 62,160\text{원} = 944,832\text{원}$

##### 나. 재적(m<sup>3</sup>)을 직접 조사할 경우

$$\text{시가표준액} = \text{간재적} \times \text{본수} \times \text{m}^3\text{당 단가}$$

- 1) 총재적 : 간재적 × 본수
- 2) 간재적 : 흉고직경, 수고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림청 발행 재적표에서 찾음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 : 소나무 · 간재적 : 0.1242 · 소나무 m<sup>3</sup>당 단가 : 62,160원  
· 본 수 : 20본
- 취득일시 : 2017.05.06
- 시가표준액  
 $0.1242 \times 20\text{본} \times 62,160\text{원} = 154,405\text{원}$

## ■ 유실수

$$\text{시가표준액} = \text{본당 기준가격} \times \text{본수}$$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 : 사과나무 15년생      · 사과나무 본당 기준가격 : 75,860원
  - 본 수 : 10본
- 취득일시 : 2017.05.06
- 시가표준액  
75,860원 × 10본 = 758,600원

## 6.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 가. 산림목

#### 《재적(m<sup>3</sup>)이 나타난 경우》

- 1)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를 과표에 적용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가 제출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으로 한다.
- 2) 그러나, 산림경영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재적을 직접조사 하는 경우》

- 1)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여 산림청 발행 입목간재적표에서 입목재적을 구한다.
  - 흉고직경은 지상 120cm부위에서 2cm단위로 측정하고 수고는 m단위로 조사하며 m이하는 절사한다.
  - 재적 조건표에서 수종별, 지역별 구분에 의하여 간재적을 구한다.
  - 재적 조건표에 수종별, 지역별,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입목은 유사수종 또는 유사지역을 적용한다.
- 2) m<sup>3</sup>당 단가는 종류에 따라 조사 결정한 m<sup>3</sup>당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산림목 m<sup>3</sup>당 단가표

(단위 : 원)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적용가격	62,160	28,320	29,600	12,080	8,160

## 나. 유실수

### 1) 유형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

### 2)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평가

### 3) 위 기준에 따라 수령별 가격을 산출한 후 현실화율(7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유실수 중 일부 수종은 소득자료 통계 확인 등이 어려워 전년대비 2016.6월 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유실수 본당 단가표

(단위 : 원)

수령별 수종별	5년생 까 지	10년생 까 지	15년생 까 지	20년생 까 지	30년생 까 지	30년생 이 상
사과	17,780	50,750	75,860	82,390	73,920	30,800
배	22,680	71,400	80,640	77,770	66,220	33,530
복숭아	31,280	78,740	56,070	17,220	6,650	-
포도	26,730	44,940	18,900	4,970	-	-
감귤	6,090	11,700	16,450	17,290	16,170	7,980
단감	10,080	32,320	54,880	56,210	36,190	9,380
유자	4,830	36,610	44,100	29,400	12,530	-
참다래	24,570	60,690	78,400	76,790	63,840	18,830
자두	14,980	33,410	43,360	38,730	17,750	7,000
매실	12,740	30,230	39,870	34,510	12,110	4,270
호두	6,090	8,820	11,130	20,230	24,150	23,520
앵두	5,040	8,820	12,250	18,710	32,450	20,280
대추	3,990	5,250	8,750	12,180	9,310	7,280
살구	2,450	4,760	7,140	8,750	10,850	7,980
모과	910	1,960	3,430	5,540	6,230	5,320
밤	2,450	4,060	6,790	9,310	9,030	7,280

\* 복숭아는 25년생까지

## 《첨부자료》

### ■ 산림목

## 《시장가역산법》

### 1. 시장가역산법 산정공식

시장가역산법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목가격에서 목재생산비용, 정상적인 기업이윤을 차감하여 산원에서의 입목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여,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x = f \times \left( \frac{a}{(1 + mp + r)} - b \right)$$

x : 단위제적당 입목가격(원/m<sup>3</sup>)

f : 조재율(소수)

a : 단위제적당 원목시장가격(원/m<sup>3</sup>)

m : 자본회수기간(개월수)

p : 월이율(소수)

r : 기업이윤

b : 단위제적당 생산비 [벌출비, 운반비, 기타비용(원/m<sup>3</sup>)]

###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결정

#### (1) 조재율(f)

조재율(이용률)이란 입목을 벌채, 반출, 가공하여 생산되는 목재제적의 입목 간 제적에 대한 비율임.

[표1] 수종별 조재율

(단위 : %)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조재율	85	79	88	83	75

\* 국유림관리소의 평균자료, 산림청 예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5)

#### (2) 단위제적당 원목시장가격(a)

한국임업진흥원 통계조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가격유통정보 등을 참작하여 2등급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단위:원/m<sup>3</sup>)

수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가격	196,500	137,800	138,300	120,700	115,200

### (3) 자본회수기간(m)

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은 산물수량 작업방법 및 반출량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3월을 적용함.

매각산물의 수량	자본회수기간	
	용재기준	신탄재기준
300m <sup>3</sup> 미만	0.5월	1월
300m <sup>3</sup> ~ 500m <sup>3</sup>	1월	2월
500m <sup>3</sup> ~ 1,000m <sup>3</sup>	2월	3월
1,000m <sup>3</sup> ~ 2,000m <sup>3</sup>	3월	4월
2,000m <sup>3</sup> ~ 3,000m <sup>3</sup>	4월	5월
3,000m <sup>3</sup> ~ 5,000m <sup>3</sup>	5월	6월
5,000m <sup>3</sup> 이상	5월	6월

### (4) 월 이율(p)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3.625% 적용함.

이율	월	적용
3.625%	12	0.00302

### (5) 기업이윤(r)

순이익, 결손률,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15% 적용함.

### (6) 단위제적당 생산비(b)

#### 가. 별목조재비

##### (가) 인건비

공사부분 시중노임단가 중 별목부임(별목조재작업) 및 보통인부임(가지치기)을 적용하였음.

별목부임	보통인부임	합계
133,882/일	94,338/일	228,220/일

\*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한국물가협회)

##### (나) 기계톱경비

기계경비(감가상각비+유지비+이자)는 기계톱가격에 보정률(0.0084)을 적용하여 산정함.

기계톱가격	보정률	적용가격
840,000	0.0084	7,056/일

\* 산림청 예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5), 물가정보(2016)

### (다) 유류대

유류대는 휘발유와 오일의 ℓ당 가격에 각각의 하루 사용량인 5.6ℓ와 2.3ℓ를 곱하여 산정함.

휘발유		오일		합계
용량(ℓ)/일	원/ℓ	용량(ℓ)/일	원/ℓ	
5.6	1,587	2.3	3,710	17,420/일

\* 물가정보(2016)

### (라) 별목조재비용 산정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인건비	228,220	228,220	228,220	228,220	228,220
기계톱경비	7,056	7,056	7,056	7,056	7,056
유류대	17,420	17,420	17,420	17,420	17,420
합계	252,696	252,696	252,696	252,696	252,696
작업물량 (m <sup>3</sup> /일)	13.57	15.45	13.13	9.33	12.18
별목조재비 (원/m <sup>3</sup> )	18,622	16,356	19,246	27,084	20,747

### 나. 산지집재

산지집재비는 인건비(보통인부임)에서 수종별 산지집재작업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보통인부임 (원/인·일)	94,338	94,338	94,338	94,338	94,338
산지집재 작업물량 (m <sup>3</sup> /인·일)	4.3	4.6	4.6	4.6	4.3
산지집재비 (원/m <sup>3</sup> )	21,939	20,508	20,508	20,508	21,939

### 다. 운반비

- 운반비는 크게 중토장에서 제재소 및 펄프공장까지의 대운반비와 토장에서 중토장까지의 운반비인 소운반비로 구분하여 산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 발표한 2016년 원목 시장가격동향 여림호를 기준으로 적용함.
- 소운반비의 상차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침엽수는 4,500원/m<sup>3</sup>, 활엽수는 4,500원/m<sup>3</sup>으로 나타남.
- 대운반비의 상차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침엽수는 5,000원/m<sup>3</sup>, 활엽수는 5,000원/m<sup>3</sup>으로 나타남.
- 침엽수와 활엽수는 함수율 등의 차이로 적재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여 운반비를 산정함.

침엽수 1m<sup>3</sup> = 0.8톤, 활엽수 1m<sup>3</sup> = 1톤

**(가) 소운반비**

침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m 이내	4,500	9,000	13,500
500 ~ 1000m		13,000	17,500
1000 ~ 2000m		17,000	21,500

활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m 이내	4,500	11,300	15,800
500 ~ 1000m		15,500	20,000
1000 ~ 2000m		20,500	25,000

**(나) 대운반비**

침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5,000	5톤	9,800	14,800	25톤	9,500	14,500
50~100km			10,800	15,800		10,500	15,500
100~150km			11,300	16,300		12,000	17,000
150~200km			12,800	17,800		13,000	18,000
200~250km			13,300	18,300		15,000	20,000
250~300km			14,800	19,800		17,000	22,000
300km 이상			15,300	20,300		18,000	23,000

활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5,000	5톤	12,800	17,800	25톤	11,500	16,500
50~100km			14,100	19,100		13,000	18,000
100~150km			15,300	20,300		14,500	19,500
150~200km			16,500	21,500		16,000	21,000
200~250km			17,700	22,700		18,000	23,000
250~300km			20,000	25,000		21,000	26,000
300km 이상			21,200	26,200		22,500	27,500

**라.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벌목조재비, 산지집재비, 운반비 합계의 10%를 적용함.

**마. 단위재적당 생산비**

(단위 : 원/㎡)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별 출 비	벌목조재비	18,622	16,356	19,246	27,084	20,747
	산지집재비	21,939	20,508	20,508	20,508	21,939
	소계	40,561	36,864	39,754	47,593	42,686
운 반 비	소운반비	13,500	13,500	13,500	13,500	15,800
	대운반비	17,000	17,000	17,000	17,000	19,500
	소계	30,500	30,500	30,500	30,500	35,300
소 계		71,061	67,364	70,254	78,093	77,986
기타비용(10%)		7,106	6,736	7,025	7,809	7,799
합 계		78,167	74,100	77,279	85,902	85,784

**(7) 시가표준액**

위의 각 항목별 수치를 입목가격 산정공식에 대입하여 수종별 시가표준액을 계산함

■ 유실수

1. 산정방식

가. 유행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를 기초로,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고, 성과기의 현금 흐름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 결정

나.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산정

가. 수확량 및 판매량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5) 등을 기준하여 수령별 수확량을 추정하고 10a당 수확량에 상품화율을 적용하여 판매량 결정.

(kg/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790	1,096	1,000	1,800	550	30
10년생	2,136	2,968	2,300	2,300	2,300	1,000
15년생	2,903	3,600	2,100	1,500	3,400	2,050
20년생	2,903	3,600	1,100	1,000	3,900	2,400
30년생	3,000	3,200	-	-	4,000	1,950
40년생	2,700	3,000	-	-	3,500	1,150

나. 조수입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기준으로 연생별 조수입을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1,842,283	1,879,665	2,593,008	5,374,824	459,518	46,447
10년생	4,980,626	5,091,051	5,963,918	6,867,831	1,921,622	1,548,218
15년생	6,768,753	6,174,720	5,445,317	4,479,020	2,840,659	3,173,848
20년생	6,768,753	6,174,720	2,852,309	2,986,013	3,258,403	3,715,724
30년생	6,996,012	5,488,640	-	-	3,341,952	3,019,026
40년생	6,296,411	5,145,600	-	-	2,924,208	1,780,451

다. 생산비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상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에 경영이윤, 대출 원리금, 자가임차료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1,775,199	2,003,318	2,370,617	4,312,884	595,375	472,525
10년생	3,429,834	3,848,425	4,262,998	5,294,705	1,477,252	1,390,807
15년생	4,372,591	4,471,048	3,971,862	3,723,792	2,031,574	2,384,824
20년생	4,372,591	4,471,048	2,516,185	2,741,970	2,283,539	2,716,163
30년생	4,492,409	4,076,860	914,939	-	2,333,932	2,290,155
40년생	4,123,557	3,879,766	-	-	2,081,967	1,532,809

라. 순수익

조수입에서 총경영비를 차감한 장래 기대 순수익을 산정함.(하기 각 연생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이를 적산하고 다시 재식 주수로 나누어 특정 연생별 주당가격을 산정)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67,084	-123,653	222,391	1,061,940	-135,857	-426,078
10년생	1,550,792	1,242,626	1,700,921	1,573,125	444,371	157,411
15년생	2,396,162	1,703,672	1,473,455	755,228	809,085	789,024
20년생	2,396,162	1,703,672	336,124	244,043	974,864	999,561
30년생	2,503,603	1,411,780	-	-	1,008,020	728,870
40년생	2,172,853	1,265,834	-	-	842,241	247,642

마. 가격결정

유행수는 상기의 투하비용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성과기 이후는 상기 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된 10a당 수익가격을 재식 주수로 나누어 주당 가격을 산정함(아래 표 참조). 최종 가격은 여기서 다시 5년 단위로 평균하여 단일 단가를 산정하고 단수정리하여 기재하게 됨.

(원/주)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70,811	79,463	121,083	81,264	12,737	25,348
10년생	109,730	111,721	118,107	50,012	20,874	66,294
15년생	118,540	115,036	51,036	14,406	24,582	86,576
20년생	116,955	107,865	16,414	1,816	24,614	75,027
30년생	90,948	85,590	-	-	20,826	31,913
40년생	36,230	48,621	-	-	12,182	7,178

## Ⅷ. 어업권

###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어업권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말한다.

## 2. 종 류

### 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 1)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 등)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2) 해조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3) 패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4) 어류 등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5) 복합 양식어업 : 2)~4) 및 6)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 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6) 마을 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 7) 협동 양식어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2)~5)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 8) 외해 양식어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 1) 양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2)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3) 공동 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3. 적용요령

#### 1)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본 기준가격 등은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 산출예시 〉

- 취득물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어업의 종류 : 패류 수하식
  - 양식방법 : 연승식
  - 면적 : 10ha
  - 면허취득일 : 2015. 3. 1.
- 취득일시 : 2017. 5. 1.
- 취득(신고)가격 : 60,000,000원
- 기준가격 : 6,300,000원/ha
- 당해 어장의 시가표준액 산정  
6,300,000원 × 10ha = 63,000,000원(10ha 기준)

####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본 기준가격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어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text{조사가격} = \text{인근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text{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text{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text{결정가격} = \text{조사가격} \times 0.7$$

○ 인근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시장·군수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어장의 지역별·종별·양식방법별 형성가격을 조사한 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거 시·군·구에서 조사한 동종어장의 1ha당 어구값의 시장(市場)가격

- ha당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시장조사 어구값

$$\text{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frac{\text{동종어장의 시장조사 어구값의 합계액}}{\text{시설별 어구값의 합계액}} \times \frac{(\text{면허기간} + \text{연장기간}) - \text{경과연수}}{\text{면허기간} + \text{연장기간}}$$

- 어구시설이 없는 어장의 경우는 어구설치비 제외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한 동종어장의 1ha당 표준종패 및 치어대의 시장조사가격

- 1ha당 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양식물 종패 및 치어대

- 양식물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음

#### 어업권면허 유효기간

구 분	어업의 종류	유효기간	비 고
수산어업	정 치 망 어 업	10년	
	양 식 어 업	"	
	마 을 어 업	"	
내수면어업	양 식 어 업	10년	
	정 치 망 어 업	5년	
	공 동 어 업	"	

〈 산출예시 〉

- 취득물건
  - 어장명 : 해조류양식(미역)
  - 면적 : 10ha
  - 면허취득일 : 2005. 5. 1.
  - 취득일시 : 2017. 5. 25.
  - 취득(신고)가격 : 180,000,000원
-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조사 결정액 : 300,000,000원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당해어장의 시설어구비 시장조사액 : 30,000,000원(10ha)
  - 어구설치비 : 30,000,000원 ×  $\frac{(10년 + 10년) - 12년}{10년 + 10년} = 12,000,000원$
- 당해어장의 종패대 시장조사액 : 8,000,000원(10ha)
- 조사가격
  - (매매실례가격) - (어구설치비) - (종패 및 치어대)
  - 300,000,000원 - 12,000,000원 - 8,000,000원 = 280,000,000원(10ha 기준)
- 당해 어장의 결정가격
  - 280,000,000원/10ha(조사가격) × 0.7 = 196,000,000원/10ha
  - ※ 결정과표 산출액의 1,000원미만 버림

## 4. 기준 가격 표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단위	기준가격
		종별	유형별				
인천광역시	강화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59,500
인천광역시	강화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가무락	1ha	4,2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합	바닥식	살포식과 투석식	-	1ha	3,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합	수하식	건홍식과 연승식	-	1ha	4,2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2,8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합	축제식	축제식	-	1ha	59,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어류등	바닥식	살포식	-	1ha	7,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59,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굴	1ha	5,6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가무락	1ha	4,9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1ha	10,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전복	1ha	3,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1ha	3,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백합	1ha	3,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수하식	-	굴	1ha	5,250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김	1ha	5,950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	50대	2,8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	1ha	2,800

##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목차

일련 번호	양 식 품 종	양 식 방 법	시설기준 면적	비 고
1	굴	수 하 식	1ha	
2	굴	투 석 식	10ha	
3	담 치	수 하 식	1ha	
4	피 조 개	살 포 식	1ha	
5	새 꼬 막	살 포 식	1ha	
6	꼬 막	살 포 식	1ha	
7	바 지 락	살 포 식	1ha	
8	동 축	살 포 식	1ha	
9	가 무 락 조 개	살 포 식	1ha	
10	백 합	살 포 식	1ha	
11	진 주 조 개	수 하 식	1ha	
12	큰 가 리 비	수 하 식	4ha	
13	전 복	투 석 식	1ha	
14	소 라	투 석 식	1ha	
15	김	지 주 식	1ha	
16	김	부 류 식	1ha	
17	미 역	수 하 식	1ha	
18	툇	수 하 식	1ha	
19	파 래	부 류 식	1ha	
20	대 하	축 제 식	3.3ha	

일련 번호	양 식 품 종	양 식 방 법	시설기준 면적	비 고
21	꽃            계	축    제    식	1ha	
22	송            어	축    제    식	1ha	
23	조   피   불   락	해 상 가 두 리 식	1ha	
24	넙            치	해 상 가 두 리 식	1ha	
25	농   어   ·   돔	해 상 가 두 리 식	1ha	
26	우   령   쉼   이	수   하   식	1ha	
27	갯   지   령   이	기            타	1ha	

※ 시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을 참조하여 시·군·구별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함

##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

### 1. 연승수하식(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묘		연	7,000연 이하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은 5,000연 이하)
< 시    설 >						
간        승	18mm	m	2,000			
종        승	16mm	m	300			
닷        줄	20mm	m	2,080			
부    자    묶    음    줄	8mm	m	2,000			
수하연 (코팅사)	3.8mm	연	2,840			
부        자	60ℓ	개	1,016			
	200ℓ	개	4			
닷	∅15cm×4m	개	50			
인        부						
어    장    시    설	남자	명	40			
일    반    인    부	여자	명	30			
( 채 묘 연 조 립 )	남자	명	4			
( 채 묘 연 수 하 )	여자	명	16			
계						

## 2. 투석식(간석지)(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0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산 석	20kg	개	100,000			10ha 기준
운 반 비	3톤 (선박)	척	80			
운 반 비	4톤 (차량)	대	300			
시설인부	남 자	명	400			
계						

## 3. 연승수하식(지중해담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지중해담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부 자	65ℓ	개	1,006			부자 간격 2m 기준
- 표시부자	200ℓ	개	4			
- 부자묶음줄	PP 5mm	m	2,200~3,500			
- 친 승	PP 16mm	m	2,000			
- 종 승	PP 16mm	m	200			
- 말 목	ø15cm×5m	본	52			친승, 종승 각 4개씩, 사귀 각 3개씩
- 수 하 연	PE rope (120합사)	m	15,000~20,000			
- 페타이어 (부착기)	15~20cm	kg	9,375			
* 종 요						
- 채묘기수 (콜렉타)		개	68,640~80,080			
인 부						
어 장 시 설	남	명	21			
말 목 부 설	남	명	10			
부 자 결 속	남	명	13			
수하연 조립	남	명	14			
수 하 시 설	여	명	90			
계						

#### 4. 살포식(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패	2cm 내외	마리	50만~70만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뒹	60kg	개	8			
뒹 줄	ø18mm	m	480			
사 계 줄	ø18mm	m	400			
작 업 대	12×6m	대	1			수심 20m 기준
선 박 (중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4			수심 20m 기준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중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8 20			
계						

#### 5. 살포식(새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새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패	각장 1.5~2cm	톤	1~1.5			수심 10m 기준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뒹	60kg	개	8			
뒹 줄	ø18mm	m	240			
사 계 줄	ø18mm	m	400			
선 박 (중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3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중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2			
계						

### 6. 살포식(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1.5cm	톤	3.5~7			
로 프	ø5mm	m	400			
항 목 ( 대 )	10cm×10cm×6m	개	4			
항 목 ( 소 )	5cm×5cm×2m	개	36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6			
종패운반 차량	2.5톤 트럭	대	2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4			
계						

### 7. 살포식(바지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cm	톤	3.5~7			각장 1cm는 20kg포장  각장 2cm는 30kg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cm, 길이 1.5m	본	4			
마 대	30kg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살 포 선 박	2톤	척	3~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20			
계						

### 8. 살포식(간석지)[동족]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동족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cm	톤	3.5~7			각장 1cm는 20kg포장  각장 2cm는 30kg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cm, 길이 1.5m	본	4			
마 대	30kg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운 반 용 선	2톤 선박	척	3~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20			
계						

### 9. 살포식(간석지)[가무락조개]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가무락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2.0~3.0cm	톤	3.5~7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cm, 길이 1.5m	본	4			
마 대	30kg들이	장	150~2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살 포 선 박	2톤	척	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0			
계						

### 10. 살포식(간석지)(백합)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백합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3.0cm	톤	1~3			각장 1cm는 20kg포장  각장 2cm는 30kg포장
항 목 ( 철 근 )	ø3cm, 길이 1.5m	본	80			
럿 셀 망 지	12합 12절	필	2			
상 단 버 팀 줄	ø5mm	m	400			
하 단 버 팀 줄	ø3mm	m	400			
결 속 로 프	ø5mm	m	1,400			
마 대	30kg들이	장	34~1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2톤 트럭	대	3			
종 패 운 반 ( 용 선 )	2톤 선박	척	2			
어 장 시 설 인 부 (조위망제작인부 포함)	남, 여	명	20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0			
계						

### 11. 연승수하식(진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진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간 승	PP ø5~18mm	m	2,000			
- 닻 줄	PP ø16mm	m	900			
- 부 자(대)	스티로폴 200ℓ	개	8			
- 부 자(소)	스티로폴 70ℓ	개	402			
- 닻	철재 (20kg)	개	28			
- 부자묶음줄	PP ø9mm	m	250			
- 포켓네트	70×45cm	개	2,000			
- 중간채롱	34×34cm	개	3,960			
- 모패채롱	40×70cm	개	3,960			
- 알빼기 채롱	30×40cm	개	3,960			
- 요 양 기	프라스틱제	개	1,000			
- 채롱 수하연	PP ø6mm 코팅사	환	20			
- 치 패	각장 5cm 이하	마리	23,760			
- 중 간 패	각장 5~8cm	마리	11,880			
- 모 패	각장 8cm 이상	마리	4,851			
- 핵	ø7~8mm	관	20			
* 인 부						
- 어장시설	선박 (1척×5일)	척	5			
- 인 부	남자 (10명×5일)	명	50			
- 시설인부	남자 (2명×6개월) 여자 (10명×6개월)	명	12 30			
계						

### 12. 연승채롱수하식(큰가리비)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큰가리비  
 시설기준 : 4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층 부 자	PVC ø370mm	개	227			10m간격 1개 시설
사 귀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4			사귀 각 1개 시설
중 층 부 자	PVC ø300mm	개	737			3m간격 1개 시설
사 각 승	PP로프 ø34mm	m	800			200m × 4연
멍 줄	PP로프 ø36mm	m	2,550			75m × 34연
간 승	PP로프 ø32mm	m	1,800			200m × 9연
표 층 부 자 줄	브레이드로프 ø12mm	m	1,386			6m (수하길이 5m + 묶음줄 1m) × 231개
중 층 부 자 줄	PP로프 ø9mm	m	1,106			1.5m (수하길이 1m+ 묶음줄 0.5m) × 737개
지 승	PP로프 ø9mm	m	17,600			1m간격시설(200×11×8)
육성기(채롱)	코팅철사 12단	개	2,200			1m간격 시설 (200×11)
멍	콘크리트 4각 12톤	개	34			간승 11연×2 + 중승4연×2 + 사귀
종 모 (본양성시)	각장 7cm 내외	개체	343,200			채롱당 156마리 수용
계						

### 13. 천해투석식(전복)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지주 (콘크리트)	1×1m	개	20			
부 자	100ℓ	개	20			
부 자 연 결 줄	PE ø15mm	m	600			
자 재 운 반 차 량	4톤 트럭	대	1			
종 패	각장 3cm 이상	마리	20,000			
투 석 용 석 재	300kg	개	3,330			
관 리 선	2~5톤	척	1			
시 설 인 부	남	명	4			
용 선	5~10톤	척	1			
살 포 인 부	남	명	2			
계						

14. 천해투석식(소라)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소라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어장표지 시설						* 투석후 해조류 증식에 의한 소라 등 패류자원 번식 조장 (따로 종패 살포를 안함)
부 자	스치로폴 ø30cm	개	8			
표 지 주	ø1cm×1m	개	8			
부 자 연 결 줄	PE 로프 ø15mm	m	200			
닻	300kg 석재	개	8			
투 석						
석 재	300kg	개	3,330			
선 박	100톤	척	10			
석재 운반차량	10톤	대	100			
인 부	일반인부 스쿠바다이버	명 명	10 10			
종 묘	각고 1cm	마리	20,000			
계						

15. 건흥식(지주식 망둥)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패 각	50개/상자	상자	40			1ha당 20척 기준
망	1.8×40m	척	20			
부 족	30분/속	개	8			
항 목	25척	본	420			
매 심 이 줄	PP 160 합사	환	4			
관 리 선	1톤급	척	1			
계						

### 16. 건흥식(부류식 망홍)[김]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패 각	50개/상자	상자	50			1ha당 25책 기준
망	1.8×40m	책	25			
부 족	1.8m	개	275			
결 착 사	PP 160합사	환	3			
어 미 밧 줄	PP 12mm	m	1,000			
부 자	스치로폴 360mm	개	550			
밧	소나무 1m, ø15cm	본	26			
관 리 선	1톤급	척	1			
계						

### 17. 연승수하식(미역)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미역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묘	PP ø12mm	m	3,0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2mm	m	2,000			
밧 줄	PP 150합사	m	2,000			
부 자 줄	크레모나 18합사	m	500~1,000			
종묘감는줄 ( 씨 줄 )		m	3,000			
부 자	PVC ø18cm	개	450			
밧	ø15cm×1m소나무	본	50			
관 리 선	1.5G/T	척	1			
계						

18. 연승수하식[뚝]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뚝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5~10cm	kg	300~400			
친 승	PP ø12mm	m	2,000			
뚝 줄	PP ø12mm	m	800			
부 자 줄 및 침 자 묶음 줄	PE ø3mm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ø5mm	m	2,000			
종묘줄친승	구리롱사 20합사	m	3,000			
결 착						
부 자	ø18mm	개	260			
뚝	소나무 1m ø15cm	개	40			
관 리 선	1.5G/T	척	1			
계						

19. 건흥식[부류식][파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파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망	1.8×40m	척	25			
로 프	ø15mm	m	400			
로 프	ø12mm	m	200			
뚝	8관	계	42			수심 7m 기준
뚝 줄	ø18mm	m	900			
항 목		본	100			
부 족 ( 大 )	1.8m	개	275			25척×11개/척
부 족 ( 小 )		개	300			
부 자	스치로폴(大)	개	44			
P P 사	30합사	관	10			
채 취 선	0.8톤	척	1			
계						

## 20. 축제식(대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대하  
시설기준 : 3.3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토목공사>						
1. 방조제						
성 토		m <sup>2</sup>	41,800			
돌 불 임		m <sup>2</sup>	3,110			
사 석		m <sup>2</sup>	4,400			
줄 띠		m <sup>2</sup>	1,584			
콘크리트		m <sup>2</sup>	625			
거푸집		m <sup>2</sup>	308			
철 근		톤	1.32			
2. 내 방 제						
성 토		m <sup>2</sup>	53,922			
콘크리트		m <sup>2</sup>	1,544			
거 푸 집		m <sup>2</sup>	245			
3. 구조물공사						
취배수문	3×3m	개소	2			
<건축공사>						
1. 사료처리장	블럭조	평	50			
2. 사 무 실	블럭조	평	30			
3. 관 리 사	벽돌양육	평	36			
<양성관>						
1. 치 하	체장 2cm 내외	미	600,000			ha당 200,000미
2. 사 료	배합사료	kg	150,000			
계						

## 21. 축제식(꽃게)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꽃게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330g/미	kg	4,000			
사 료	어 분	kg	4,000			
PP 그물망	35×35mm	필	2			
백관(pipe)	ø50mm, 길이 2m	개	200			
철 선	# 8	m	416			
지 지 향	ø12cm, 길이1.8m	개	28			
시 멘 트	40kg	포	15			
선 박	2톤	척	1			
계						

## 22. 축제식양식(송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송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방 조 제 성 토		㎡	100,000		
방 조 제 돌 불 임		㎡	4,000		
방 조 제 사 석		㎡	5,000		
주 , 배 수 문	ø1000mm×15	개 소	2		
관 리 사	콘크리트블럭 건물	평	100		
사 료	배합사료	kg	20,000		
약 품	포르마린 등	ℓ	200		
관 리 선	소형 전마선	대	1		
관 리 인	남	명	3		
기 술 자	양식기사	명	1		
계					

## 23. 해상가두리(조피볼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조피볼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부 자	스티로폴 (400ℓ)	개	240			수심 10m 기준
목 재	각목 (10cm×12cm×6m)	개	160			
그 물	나이론 38합사 8절	필	6			
그 물	나이론 15합사 12절	필	6			
그 물	나이론 9합사 20절	필	6			
부 자 결 착 줄	PP사ø8mm	m	1,000			
돛	철재 75kg	개	34			
돛 줄	PPø22mm	m	1,020			
항 줄 로 프	PE사 ø8mm	m	800			
볼 트 , 너 트	22cm×4부	개	640			
관 리 사 및 착 업 대	5×5m	조	12			
관 리 선	선외기 (0.5톤)	척	1			
시 설 제 작 인 부	특수인부	명	180			
계						

## 24. 해상가두리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아비동					
부 자	(12cm×15cm×10m)	개	240			
돛	대형 (400ℓ)	개	420			
돛 줄	철제 75kg	개	26			
사 육 망	PP로프 ø40mm	m	1,170			수심 15m 기준
(방오처리망)	모지망 105경	조	5			5×5×3m
	무결절 30합 8절	조	40			"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10×10×3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mm	m	2,400			
볼트, 너트	33cm×6부	개	1,440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mm	개	40			5×5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mm	개	10			10×10m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 25. 해상가두리식(농어/돔)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농어/돔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12cm×15cm×10m	개	240			
부 자	대형 (400ℓ)	개	420			
돛	철제 75kg	개	26			
돛 줄	PP로프 ø40mm	m	1,170			수심 15m 기준
사 육 망	모지망 105경	조	5			5×5×5m
(방오처리망)	무결절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5×5×5m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10×10×7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10×10×7m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mm	m	2,400			10×10×7m
볼트, 너트	33cm×6부	개	1,440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10×10×7m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 26. 연승수하식(우렁챙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우렁챙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 부 자						
- 소 형	개량부자 65ℓ	개	660			
- 중 형	스치로플 200ℓ	개	4			어장표시용
* 로 프						
- 사 각 줄	ø18mm	m	400			뿔 100개×45m
- 닳 줄	ø18mm	m	4,500			18줄×100m
- 연 승 줄	ø18mm	m	1,800			
- 허 리 줄	ø18mm	m	100			
- 부자줄 및 부자묶음줄	ø9mm	m	4,000			
- 수하연 묶음줄	ø9mm	m	3,000			
- 천 로 프	ø30mm	m	5,000			
- 종 요	m당 100미	m	71,000			
- 말치는 장비 (항타기)	-					
- 말 목(뿔)	소나무 ø15cm×5m	대	1			
2. 인 부		개	100			
* 어장시설 (말목박기)						
* 연승나르기 및 사각류기	남자(고용) (자가)	명	3, 1			8명×10일
* 종요감기 및 분양성	남자(고용) (자가)	명	2, 1			2명×3일
* 수하연 육상제작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80, 10			2일×1척
* 종요운반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6, 3			1명×2일
* 종요운반작업대	동력선(자가) 2.5톤	척	2			1명×2일
* 종요운반 인부	5×8m	대	1			
3. 부대시설	남자(고용),남자(자가)	명	2, 2			
* 관 리 선		척	1			
* 작 업 대	동력선(자가) 5×8m(자가)	대	1			
계						

## 27. 기타 (갯지렁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갯지렁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지 철 주	ø22mm×2m	본	4			
철 주	ø16mm×1.5m	본	140			
세 망	방충망 폭 70cm	m	4,200			
목 부 자	ø50mm	개	13,800			
갯 지 령 이	모 총	kg	400			
버 리 줄	PE rope ø6mm	m	14,800			
트 와 잉 사	PE rope ø5mm	m	1,400			
대 부 자	스치로플 ø30×50cm	개	70			
소 부 자	스치로플 ø30cm	개	60			
부 자 연 결 줄	PE rope ø5mm	m	700			
그 물 작 업 인 부	남 자	명	80			
자 재 운 반	4.5톤 트럭	대	1			
시 설 인 부	남 자	명	200			
계						

# IX. 광업권

## 《관련 규정》

###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 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 1. 정 의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2. 광업권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이 광업권의 설정대상임

## 3. 용 어 해 설

- 1) 광업(鑛業) : 지하에 매몰되었거나 표토층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을 찾아내고 이를 채굴하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選鑛), 제련(製鍊) 기타의 사업을 말함
- 2) 광산(鑛山) : 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 3) 광상(鑛床) : 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것
- 4) 탐광(探鑛) : 광산·탄전 등의 개발을 위하여 광상을 발견하고, 그 성질, 상태, 규모 등을 알아내는 작업
- 5) 채광(採鑛) : 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 6) 선광(選鑛) :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 7) 제련(製鍊) : 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 4. 적용요령

- 광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외의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가.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가채광량포함)

$$\text{조사가격} = [ \text{①(톤당순수입가격} \times \text{매장량) 또는 ②인근광구의 비준가격} - (\text{③기계 및 시설비} + \text{④기계설비이전비}) ] \times 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 :  $[ \text{①} - (\text{③} + \text{④}) ] \times 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없을 때 :  $[ \text{②} - (\text{③} + \text{④}) ] \times 0.7$

#### 《적용요령》

- 1)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 2)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 : 감가액 감산 적용
- 3) 시설비 : 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산하고 구축물은 전액적용
- 4) 인근 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 제외
- 5) 기계시설이전비 : 기계시설 설치비의 10%계상
- 6)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산하여 0.7%를 승함

### 나. 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는 광산과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

$$\text{조사가격} = [ \text{①(광업권 설정비} + \text{시설비)} + \text{③(매장량} \times \text{톤당순수입가격)} - (\text{④기계 및 시설비} + \text{⑤기계설비이전비}) ] \times 0.7$$

#### 《적용요령》

- 1) 광업권설정비 : 등록시 소요경비
- 2) 시설비 : 시추작업비
- 3) 인근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제외함
- 4)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 5)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 : 감가액 감산적용
- 6) 시설비 : 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산, 구축물은 전액적용
- 7) 기계시설이전비 : 기계 및 시설 설치비의 10%계상
- 8)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산하여 0.7%를 승함

# X. 회 원 권

##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회원권을 말한다.

## 2. 종 류

### 가.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 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 라. 승마회원권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 마. 요트회원권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 3. 시가표준액

#### 가. 골프회원권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골프장명	구분	분양가	2017년 기준가격
1	인천 서구 경서동 177-1	인천국제	일반	-	43,000
2	인천 연수구 송도동 117	잭니클라우스	(창립)	1,000,000	900,000
3	인천 연수구 송도동 117	잭니클라우스	일반	930,000	837,000
4	인천 연수구 송도동 117	잭니클라우스	법인회원 4차	930,000	837,000

####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콘도명	종류	분양금액	2017년 기준가격
1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26.98㎡ 개인 (GolfTel) M/S	27,000	24,300
2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26.98㎡ 법인 (GolfTel) M/S	29,700	26,700
3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51.7㎡ 개인 (Noble A) M/S	52,000	46,800
4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51.7㎡ 법인 (Noble A) M/S	57,200	51,400
5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53.21㎡ 개인 (Noble B) M/S	53,000	47,700
6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53.21㎡ 법인 (Noble B) M/S	58,300	52,400
7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57.71㎡ 개인 (Noble C) M/S	58,000	52,200
8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57.71㎡ 법인 (Noble C) M/S	63,800	57,400
9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62.08㎡ 개인 (Golden VII) M/S	67,000	60,300
10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62.08㎡ 법인 (Golden VII) M/S	73,700	66,300

11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75.36㎡ 개인 (Spatel B) M/S	90,000	81,000
12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75.36㎡ 법인 (Spatel B) M/S	99,000	89,100
13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79.63㎡ 개인 (Royal) M/S	87,000	78,300
14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79.63㎡ 법인 (Royal) M/S	95,700	86,100
15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115.15㎡ 개인 (VIP) M/S	137,000	123,000
16	인천 중구 을왕동 773	영종스카이	115.15㎡ 법인 (VIP) M/S	150,700	135,000

### 4. 적용요령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적용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른 기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준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I 지하 자원

## 1. 정 의

지하자원이란 채광된 광물을 말한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

## 2. 지하자원(광물)의 종류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磷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珪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珪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넘,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광재: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광업법 제3조 제1호)

### 3. 관련 용어해설

- 광산(鑛山) : 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 광상(鑛床) : 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 것
- 채광(採鑛) : 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 선광(選鑛) :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 제련(製鍊) : 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 4. 적용요령

-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가액이 없을 경우 본표의 결정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